

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
(유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1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2. 26.

발의자 : 김동규, 김동수, 김정택,
김진희, 박은경, 성준모,
손관승, 송바우나, 신성철,
유화, 윤석진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안산시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

(안 제3조)

나.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4조)

다.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, 6조)

라.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7조부터 안14조)

마.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15조)

3. 조례(안) : 불임

4. 관련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

5. 예산수반사항 : -

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하여 문화예술·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박물관 및 미술관"이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2. "관련 법인·단체"란 「민법」, 「상법」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·단체를 말한다.
3. "학예사"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9조에 따라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지원)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·교육·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
3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·발표회·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
4.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
5.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,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
6.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
7.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제5조(지원경비 관리 등) ① 보조금의 지원·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6조(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
2.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
3.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
4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5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,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
2. 안산시의회 의원
3.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
1. 안산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
2.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3.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사항
4. 학예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2.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
3.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
제14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 (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) ①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·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.

1.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
2.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,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
3.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,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·효율화
4.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
제16조(우수자 등 표창) 시장은 매 해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자(이하 “우수자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, 우수자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유 화 의원 발의 (행정 3578)

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2812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3월 10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제1항에 의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, 조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안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함
- 안 제16조의 “우수자”를 각각 “우수기관”으로 하고, “기여한 자”를 “기여한 기관 및 개인”으로 수정한다.

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.

안 제16조의 제목 중 “우수자”를 “우수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기여한 자(이하 ”우수자 등“이라 한다)”를 “기여한 기관 및 개인(이하 ”우수기관 등“이라 한다)”로, “우수자”를 “우수기관”으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,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3.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,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1. 2. (원안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u>3. (원안 제4호와 같음)</u></p> <p><u>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.</u></p>
<p>제16조(<u>우수자</u> 등 표창) 시장은 매 해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자(이하 “<u>우수자</u>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, <u>우수자</u>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 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<u>우수기관</u> 등 표창) 시장은 매 해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(이하 “<u>우수기관</u>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, <u>우수기관</u>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 할 수 있다.</p>